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의 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11월 8일
제 출 자 :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2019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19. 9. 20)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공포('19. 9. 26)
- 나. 관련 조례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2. 주요내용

- 가. 집행 기간 : 2019. 1. 1. ~ 9. 30.
- 나.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	집행액	잔액	집행 내역
합 계	1,059,843	207,222	852,621	
인 력 증 원 보급예비비	1,032,000	185,807	846,193	신규 인력(23명) 인건비 ('19. 7. 15. ~ 9. 30)
일반예비비	27,843	21,415	6,428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업무용 PC 구입비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제안근거. 끝.

※ 작성자 : 서울관광재단 기획예산팀 노준식 팀장 (☎ 3788-8137)
기획예산팀 하형도 대리 (☎ 3788-8111)

붙임

제안근거 _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안근거 _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알림(공기업담당관-11501, 2019.9.3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I·SEOUL·U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2019.9.26.)

서울특별시 2019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19.9.20.)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9.9.26.(목)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출자·출연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조례 제22조의2제3항 신설)

붙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사항(서울시보 제3543호 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서울시출연기관

공무관	김규동	출자출연팀장	김경애	공기업담당관	09/27 강인봉
-----	-----	--------	-----	--------	--------------

참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1501 (2019-09-30) 접수 기획예산팀-1077 (2019.10.2.)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장 신원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
 전화 02-2133-6783 전송 02-2133-0864 / kkd0127@seoul.go.kr / 공개